

# 규슈 사가국제공항 제1주차장 유료구역 관리규정

(총칙)

제1조 규슈 사가국제공항 제1주차장 유료구역(이하 "유료구역"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계약의 성립)

제2조 유료구역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본 규정의 내용을 인지·동의 후 유료구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리자가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관리자)

제3조 유료구역 관리는 다음이 관장한다.

(1) 관리자 명칭: 사가현 사가공항사무소 소장

(2) 소 재 지 : 사가시 가와소에마치 오야자 이누이도 9476번지 187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

제4조 관리자는 제15조를 제외하고 유료구역 관리 운영 업무를 다음 회사에 위탁한다.

(1) 위탁처 명칭: 아마노 매니지먼트 서비스 주식회사 후쿠오카 지점

(2) 소 재 지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스미요시 1초메 2번 25호

(주차요금)

제5조 주차요금은 차량 1대마다 다음 표와 같이 금액을 산정한다.

시 간 구 분	요 금 액
입차 시부터 15분까지	무료
입차 시부터 15분 초과 후 최초 24시간까지	1,000엔
24시간 경과 후	1시간마다 100엔 24시간마다 최대 요금 1,000엔

2 주차요금 정산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 시 자동차 등록번호(이하 "번호판"이라 한다)를 인식한 시각으로부터 정산 시 요금정산기에 지불을 완료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출차 시 번호판을 입차 시 촬영한 데이터와 대조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번호판'이 인식되지않은 경우의 차량 요금 지불에 관해서는 주차장 내 게재된 정산방법 등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정산 후 15분 이내 출차하지 않는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3 주차요금 지불은 유료구역 내 및 소정 장소에 설치된 정산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시간 및 장기주차신청서 )

제6조 유료구역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단, 차량 출입은 5시 00분~24시 00분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출입 시간 이외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연락하여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출차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예정인 자는 사가현 사가공항 조례시행규칙(1998.07 사가현규칙 제44호)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장기주차예정신청서를 사가공항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 중지 등)

제7조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유료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중지, 주차장으로부터의 격리, 차도 통행금지 및 차량 퇴거(이하 "영업중지 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1) 자연재해, 화재, 침수, 폭발, 시설 또는 기물 손괴, 그 외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보안 상 운영 지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공사, 청소 또는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외 관리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차거부)

제8조 관리자는 유료구역이 만차인 경우 입차를 정지하며 주차하려는 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 또는 차량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1) 차량 크기에 따른 제한

- ㄱ. 차량길이가 5.0m를 초과하는 차량
- ㄴ. 차량너비가 1.9m를 초과하는 차량
- ㄷ. 차량높이가 2.3m를 초과하는 차량
- ㄹ. 적재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차량

(2) 법령위반 등에 따른 차량의 제한

- ㄱ. 미등록차량,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만료 등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된 차량
- ㄴ. 차량번호판이 덮개로 덮여있거나, 또는 제거된 차량 등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 인식이 불가능한 차량
- ㄷ.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차량
- ㄹ. 가등락 중인 차량 등 차체 특정이 곤란한 차량

(3) 다른 차량에 가해 우려가 있는 차량의 제한

- ㄱ. 차량부착물 접촉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 기기 또는 다른 자동차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ㄴ. 대형 특수자동차, 건설용 특수차량 등 특수한 용도를 가진 차량으로 주차장 시설 및 기기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ㄷ. 위험물·유해오염물질·그 외 안전 혹은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악취 발생·액체 누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적재한 차량
- ㄹ. 차량 외부의 거치대·후부·측면에 서핑보드, 윈드서핑 관련 물품, 자전거 관련 물품을 적재하여 입차·출차 시 게이트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차량
- ㅁ. 다른 차량과의 접촉, 적재물 낙하의 우려가 있는 캐리어 탑재 차량

(4) 2륜차·3륜차 등의 제한

자동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 자전거, 소형 특수자동차, 사이드카, 3륜차, 버기카, 트라이크, 미니카 등으로 불리는 차량.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차량의 부착물 및 적재물 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입차 및 주차위치)

제9조 이용자는 주차장 내 게재된 방법에 따라 입차하며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유료구역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차량의 이동 또는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량 통행)

제10조 이용자는 유료구역 내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1)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8km 이하로 서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 (2) 추월하지 아니할 것.
- (3) 출차하는 차량의 통행을 우선할 것.
- (4) 불필요한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정숙하게 운전할 것.
- (5) 표지, 신호 등의 표시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

(준수사항·금지사항)

제11조 앞 조에 게시된 사항 이외에 이용자는 유료구역에서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1) 이용자는 본인의 차량번호를 확인 후 요금을 정산할 것.
- (2) 유료구역 진입 후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할 것.
- (3) 차량 내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아니할 것.
- (4) 주차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차량에서 이탈할 시에는 창문과 선루프를 닫고 문과 트렁크를 잠가 도난 방지에 힘쓸 것.
- (5) 지정된 구역 내에 주차하고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할 것.
- (6) 주차중인 차내에 영유아를 방치하지 아니할 것.
- (7) 주차중인 차량에 동물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 (8) 흡연 및 화기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 (9) 큰 소리로 카 스테레오를 트는 행위·문을 거칠게 여닫는 행위·야간과 이른 아침 큰소리로 대화하는 행위·공항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 (10) 유료구역 내에서 숙박하지 아니할 것.
- (11) 유료구역 내의 시설, 기물, 다른 차량 및 차량부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 (12) 유료구역은 청결히 사용하며, 병, 캔 및 휴지, 종이조각, 담뱃재, 잡지, 대형 폐기물 등을 버리지 아니할 것.
- (13) 유료구역 내에서는 영업·연설·선전·모금·서명 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14) 유료구역 내 시설, 기물, 다른 차량 및 차량부착물을 손상시켰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릴 것.
- (15) 위의 각호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관리자의 업무, 또는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출차거부)

제12조 관리자는 이용자가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의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조치)

제13조 관리자는 유료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 이동 또는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

제14조 이용자가 사기 또는 그 외 부정 행위로 소정의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 사가현 사가공항조례(1998년 사가현조례 제22호)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미납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만 엔 미만인 경우는 5만 엔으로 한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치차량)

제15조 관리자는 사가현 사가공항조례 제22조부터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방치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량 적재물 또는 차량부착물에 관한 면책)

제16조 관리자는 유료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차량부착물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사유)

제17조 관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유료구역 내 차량 또는 적재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다른 이용자 혹은 그 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유료구역 내 차량 또는 적재물·차량부착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 외 유료구역 내에서 발생한 관리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자연재해 또는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 (2) 당해 차량의 적재물 또는 차량부착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 (3) 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충돌, 접촉 및 그 외 주차장 내 사고
- (4) 제7조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
- (5) 제13조 규정에 따른 조치
- (6) 출차 지연 등의 손해
- (7) 이용자의 번호판 오인으로 인한 정산 착오
- (8) 제8조에서 규정한 차량 주차로 인해 동반되는 손해
- (9)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행으로 인한 손해
- (10) 다른 차량 등의 입차 또는 출차 방해로 대기시간·기회손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
- (11) 이용자 간 트러블 또는 제삼자와의 트러블로 발생한 손해
- (12) 관리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
- (13) 이용자의 자기과실에 의한 손해

제18조 관리자가 이용자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